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3 제출년월일 : 2018. 01.

제 출 자: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이 직접 규정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제1항)
 - ►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나.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 ▶ 상위법에 직접 규정된 제1항을 삭제함
-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제1항)
- ▶ 취득시점 연장 : 2017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 취득시점 연장 : 2017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 감면기간 연장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별첨 2)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2017-1342(2017.11.14~1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감사실-14724호/2017.11.24)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15316호/2017.12.8)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주민생활지원과-67660호/2017.11.20.)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	대한 감면) ①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	
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	
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	
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	
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	
우자 •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	
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	
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 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 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 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 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는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② ~ ⑤ (생 략)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저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 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 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 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생 략)

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감면) ①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

_						_	-			_	-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				_	_			_	_						-	_
_				_		-	_			_	_	_					_	_
_						_	2	20.	19	١Ę]	1	2	월		3	1 9	싈
_																		
2	2)	\sim	(ļ	5	(र	현	ઠૃ] ī	4	7	<u>}</u>	음	-)					
भ <u>]</u> 4:	조	(듄	<u>-</u> す	}7	(}	케		다	ą	i i		감	- []	<u>부</u>)	<	()	삭
<u>ス</u>	1)>	>_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

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 정비계획법 1 제6조에 따른 과 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 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 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

2019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세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한 감면)

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 전 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u>2019년 12월 31일</u>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
면)
<u>2019</u>
<u>년 12월 31일</u>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 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5.3.27., 2015.12.29.>
-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

- 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경감할 수 있다.
-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2.3., 2016.12.2.>

-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 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 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15.2.3.>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전문개정 2010.6.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이정균
연락처	(033) 330 -2270